

CCSP 거절조치 통지서
CCSP Denial Notice

고객 서비스 연락처 콜 센터 전화번호	고객 서비스 연락처 콜 센터 팩스 번호
수혜자/의뢰인 ID 번호	날짜

_____일에 CCSP(Child Care Subsidy Program) 프로그램에 탁아서비스 보조금을 신청하셨습니다. 유감스럽지만 귀하의 신청을 기각합니다.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귀하가 탁아서비스 보조금 신청을 취소했음. WAC 170-290-0120
- WAC 170-290-0005 에 따라 탁아서비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.
- 귀하의 활동이 WAC 170-290-0040, 170-290-0045, 또는 170-290-0050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음.
- 소득이 WAC 170-290-0005 에 따른 프로그램 자격 요건으로 허용하는 최대 수준을 초과함.
- 자산이 WAC 170-290-0022 에 따른 프로그램 자격 요건으로 허용하는 최대 수준을 초과함.
- WAC 170-290-0030 에 따라 지불해야 할 탁아비 공동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이를 지급하기 위한 합의를 하지 않았음.
- WAC 170-290-0012 에 준한 수혜자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음.
- _____일에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필요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.
- 기타:

질문이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심의회회 권리

귀하가 이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 사무소에 연락하시거나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, PO Box 42489, Olympia, WA 98504-2489 에 서면으로 심의회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심의회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:

- 귀하가 현재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혜택이 지속되기를 원할 경우는 이런 처사 시효일이나 시효일 이전 혹은 이 통지서를 저희가 우송한 후 10 일 이내, 또는
- 귀하가 이 통지서를 받은 후 90 일 이내.

심의회회에서 귀하는 귀하자신을 대표하거나 혹은 변호사나 귀하가 선정한 대리인이 귀하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귀하가 법률상담소에 연락할 경우는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